

## 정원 및 순회교사제

### 1 정원

#### 가. 관련 규정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, 제22조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

##### 1) 교원 정원

- 가) 교원의 구분 및 배치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, 제22조)
- (1)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·교감·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. 다만,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3>
  - (2)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(校務)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.
  - (3)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동법 제6조에 따른 지도·감독기관(관할청)이 정하며,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(4)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 교사·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- 나) 교감의 미배치(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36조의 2)
- (1)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”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 <개정 2013.2.15.>
  - (2)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.